



보도자료

▶ 노사관계법제팀 최준하 서기관

TEL : 503-9734~5

E-MAIL : zeeper@molab.go.kr

FAX : 503-9731

▶ 2007. 5. 2. 배포

▶ 총 3 쪽 (사진없음)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lab.go.kr>(최신자료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"필수유지업무 범위 설정 본격 공론화"

- 5.3일 "필수유지업무 제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" 에서
필수공익사업의 업종별 노사의 입장 첫 공개 -

□ 「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」상 필수공익사업*의 직권중재제도를 대체하여 내년 1월 시행될 필수유지업무 제도의 필수유지업무 범위 등 노조법시행령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5.3(목)일 열린다.

*철도·도시철도, 수도, 전기, 가스, 석유, 병원, 통신, 우정, 한국은행, 2008.1월부터 항공운수 및 혈액공급사업 추가

□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간 업종별 TF에 참여해온 각 필수공익사업별 노사단체 인사, 관계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여 필수유지업무 범위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것이며,

○ 양대 노총·경총 등 상급 노사단체에서도 제도설계 및 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.

□ 지금까지 확인된 노사의 기본입장을 보면,

○ 노측은 필수유지업무의 범위, 유지율 등을 가급적 노사협정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입장인 반면,

- 사측은 공익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도록 유지운영 수준 등을 보다 상세하게 시행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.
- 각 업종별로 보면, 전기·수도·가스 등 생존 필수서비스(생명·건강·신체안전과 직접관련)의 경우 연관업무가 상대적으로 폭넓게 필수유지업무로 설정될 필요가 있으나,
 - 철도·석유 등 최소서비스(공중의 일상생활의 불편 초래) 분야는 그 범위를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.
- 참고로 직권중재제도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 쟁의행위를 규제할 목적으로 1953년 도입된 이래
 - 노사의 자율적 교섭을 제약하고,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ILO 등 국내외 노동단체로부터 지속적인 제도 개선요구가 있었다.
 - 이에 따라 지난해 노사정 합의를 거쳐 노사관계선진화 입법의 일환으로 2008년 1월 부터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, 필수유지업무제도를 골자로 한 노조법을 개정한 바 있다.
- 노동부는 동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난 2월~4월말까지 노사단체, 관계 전문가,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여하는 업종별 5개 TF를 구성, 이 문제를 논의해 왔으며,
 - 그간의 논의결과와 오늘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정부시안을 마련, 입법예고하는 등 공식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< 불 임 >

『필수유지업무 제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』 개최계획

□ 목적

-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범위 설정 및 제도운영 관련 의견수렴 위한 노사단체·전문가 참여 토론회 개최

□ 주최 및 주관

- 노동부에서 주최하되, 노동연구원 주관으로 실시

□ 일시 및 장소

- 일시 : 2007. 5.3(목) 10:00~17:30
- 장소 : 여의도 63빌딩 3층 코스모스홀

시 간	분 야(session)	사회자	발제자
10:00 ~ 10:10	결려사 (노동부장관)		
10:10 ~ 11:00	총괄 토론	임종률 교수	
11:10 ~ 12:00	통신·우정·한국은행	임종률 교수	조용만 교수
12:00 ~ 13:00	중식 및 휴식		
13:00 ~ 15:10	수도·전기	노동연구원장	유성재 교수
	가스·석유	노동연구원장	문무기 박사
15:10 ~ 15:30	휴 식		
15:30 ~ 17:30	병원·혈액	노동연구원장	박제성 박사
	철도·항공	노동연구원장	강성태 교수

□ 토론자 참석

- 총괄토론 : 이민우(한국노총), 김태연(민주노총), 최재황(경총), 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장
- 분야별 토론 : 업종별 노사단체, 관계 전문가